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3일, 이원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는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도입 목적과 대상작물 등이 중복될 수 있어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구성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회의 실적이 전무한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처럼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더욱이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② “공익직불 운영 심의위원회”를 “공익직불 운영 협의회”로 개정하고, 이를 비상설화하려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법 일괄 개정안(정부제출, 2024.7.23.)’이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